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2 - 3호

원자력법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작성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2년 1월 3일
과학기술부장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원자력법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사용·이동사용?판매허가신청에 따른 허가신청자의 안전관리규정 작성에 적용한다.

제3조(일반지침)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따른 일반지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규정은 방사선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와 방사선작업 종사자, 일반인, 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규정은 객관적이고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하되,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사례 또는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안전관리규정은 사용현장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해한 후에 작성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규정의 내용 중 방사선안전보고서와 유사한 항목은 방사선안전보고서에 기술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규정 작성은 위한 방사선 안전성 평가에 사용된 방법 및 기술은 검증된 최신의 것이어야 하며, 검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이때에 인용된 자료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지침) 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첨]의 세부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방사성동위원소 등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 방사선안전관리를 위한 조직도와 함께 조직도에 명시된 관련자의 직무를 기술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구매·사용 및 판매(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생산단계를 포함한다)하기 위한 절차 및 관리방법을 기술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기술한다.

4. 방사선량률 · 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 측정의 대상 또는 장소 및 주기와 그 결과의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에 대하여 기술하고 관련 양식을 첨부한다.
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 및 관리방법과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6.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기 위한 개인선량계의 패용방법 및 절차와 개인선량계의 관리 및 관독 또는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7.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의 대상, 주기 및 교과목의 내용과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절차 및 결과의 관리에 대하여 기술한다.
8.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방사선장해발생의 여부를 발견하기 위한 건강진단 등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9.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방사선장해발생자 또는 우려자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0.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 : 원자력법령 및 관련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기록사항 및 보존기간을 기술하고 관련양식을 첨부한다.
11.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 생산 또는 사용하고자 하고 방사성동위원소 등과 관련하여 비상사태를 고려하여 이에 대비한 응급조치, 보고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 · 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계획과 사고발생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기술한다.

제5조(작성범위) 세부작성 지침의 항목 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준용 및 협의)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내 관련법규를 준용하거나 관련 인 · 허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허가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안전관리규정은 이 지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전관리규정의 개정이 허가조건에 부과된 허가사용자는 이 지침의 공포 후 3월 이내에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별첨]

안전관리규정 세부작성지침

1. 방사성동위원회 등 또는 방사성동위원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조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

가. 조직도

- 대표자를 정점으로 한 방사선원 및 사용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조직도의 형태로 도시한다.

나. 직무

- 대표이사, 부서장,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다만, 방사선안전관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직무를 분리하여 기술한다.

2. 방사성동위원회 등의 구매·사용 및 판매에 관한 사항

가. 구매

- 방사선원의 구매·인수·인계·저장절차를 기술한다.
- 구매요구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매요구서 양식, 작성방법 및 승인절차를 기술한다.

나. 사용

- 방사선원의 반입·반출·인수·인계·승인절차를 기술한다.
- 방사선원을 사용할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기준을 기술한다.
- 밀봉선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누설점검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다. 판매

- 방사성동위원회 등의 판매허가자의 경우에는 운반을 포함한 방사선원의 판매 및 승인절차를 기술한다.
- 방사선원을 판매 및 운반할 때에 준수하여야 하는 기술기준을 기술한다.
- 구매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용·운영·보수 및 관리방법이 포함된 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기술한다.
- 판매한 방사선원의 사후관리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라. 생산

- 방사성동위원회 등의 생산허가자의 경우에는 생산단계마다의 관리절차를 기술한다.

3. 방사성동위원회 또는 방사성동위원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에 관한 사항

가. 절차

-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의 각각에 대한 취급 및 승인절차를 기술한다.

나. 기술기준

- 분배·보관·운반·처리·배출·저장·자체처분 및 인도의 각각에 대한 취급기준을 기술한다.

4. 방사선량률·피폭방사선량 및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및 그 측정 결과의 기록과 보존에 관한 사항

가. 측정

- 방사선량률의 측정방법, 절차 및 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 방사능오염의 측정방법, 절차 및 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 피폭방사선량의 측정방법, 절차 및 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기록 및 보존

- 측정결과의 기록사항 및 그 보존기간에 대하여 기술한다.
- 기록양식을 첨부한다.

5.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관리 및 교정에 관한 사항

가. 보관 및 관리

-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보관장소 및 비치장소를 기술한다.
-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점검방법, 절차 및 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교정

- 방사선안전관리장비의 검?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6.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개인선량계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 피폭방사선량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 개인선량계의 분실 등 판독특이자에 대한 후속조치와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나. 개인선량계의 관리

- 개인선량계의 지급 및 회수 등 관리절차를 기술한다.
- 포켓도시메타의 경우에는 비치장소와 점검절차 및 교정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7.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장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 교육훈련의 시기, 과목 및 시간에 대하여 기술한다.
-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기술한다.
- 교육훈련의 평가방법 및 그 결과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8. 방사선장해발생 여부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방사선관리구역의 설정기준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시기, 방법 및 주기에 대하여 기술한다.
- 가능하다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위치 및 담당의의 신상명세를 기술한다.
- 방사선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의 점검에 대하여 기술한다.

9. 방사선장해를 받은 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취하여야 할 보건상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건강진단 결과 특이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10.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과 이의 비치에 관한 사항

가. 기록

- 기록사항을 기술하고 관련양식을 첨부한다.

나. 비치

- 기록장부의 비치장소 및 보존장소?기간을 기술한다.

11.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과 관련한 비상사태를 고려하여 이에 대비한 응급조치, 보고 및 조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 비상대응을 위한 방사선작업의 승인절차 및 방법을 기술한다.
-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내용 및 절차에 대하여 기술한다.

12.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분실 · 도난 등 사고시의 조치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분실 ·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계획에 대하여 기술한다.
- 분실 · 도난 등의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 사고발생시 보고내용 및 방법 대하여 기술한다.

13.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 책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사항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을 기술한다.

14. 기타 방사선장해의 방어에 필요한 사항

- 진료를 목적으로 방사선기기를 인체에 사용하는 사업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술한다.
 - 품질관리절차서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취급절차서를 구비하여 이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사용하고자 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기술한다.
-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이외에 별도로 적용하고자 하는 국내 · 외의 기술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술한다.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부고시 제2002 - 4호

원자력법 제67조제1항 및 원자력법시행령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에 대한 정기검사면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

2002년 1월 3일
과학기술부장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법 제67조제1항 및 원자력법시행령 제19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허가사용자(이하 "허가사용자"라 한다.)에 대한 정기검사의 면제를 위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기검사주기가 매 1년인 허가사용자 중에서 전년도에 정기 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면제대상자의 선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2월말까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허가사용자자를 당해 년도 정기검사계획에 반영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정기검사 면제기준) 안전관리실적평가표(별표1)에 의한 평점이 70점 이상인 허가 사용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정기검사 면제의 통보) 기술원장은 정기검사가 면제되는 허가사용자에 대하여 당해 년도 정기검사계획에 따라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기검사 면제에 대한 조치)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 정기검사가 합격된 것으로 한다.

제7조(정기검사 면제 예외규정) 과학기술부장관은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 문제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통하여 방사선안전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2001년도에 정기검사가 면제된 허가사용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안전관리실적 평가표

항 목		해당기간	평점	비고
1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지적사항	전년도	-30	(주1)
2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권고사항	전년도	-10	(주2)
3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준비 및 수검자세가 우수함	전년도	+5	
4	방사성동위원소의 분실 또는 도난 사고 발생	최근 1년간	-50	
		1~2년 경과시	-40	
		2~3년 경과시	-30	
		3~4년 경과시	-20	
		4~5년 경과시	-10	
5	선량한도 초과피폭자 발생	최근 1년간	-30	
		1~2년 경과시	-20	
		2~3년 경과시	-10	
6	피폭선량 측정결과 판독 특이자 발생	최근 1년간	-10	
		1~2년 경과시	-5	
7	변경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음	최근 1년간	-5	
8	안전관리자의 변경 실적이 있음	최근 1년간	-5	
9	각종 보고 또는 신고기한 초과	최근 1년간	-5	
10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는 폐기선원이 있음	당해년도 현재	-5	

※ 기본점수 100점에서 각 항목의 점수를 가감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면제 가능

(주1) 발급건당 5점 감점, 최대 30점 감점

(주2) 발급건당 2점 감점, 최대 10점 감점